

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)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『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』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(안 제7조1항)
- 구미시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(안 제7조4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

3. 참고사항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, 제12조

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관장한다”를 “맡는다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5대대장”을 “1대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구역 안에 소재하는”을 “구역 안에 있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직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운영세칙)”을 “(운영규정)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<u>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</u>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<u>관장한다</u>. 1. (생략) 2. <u>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의결</u> 3. ~ 5. (생략) 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<u>부의하는</u> 안전의 심의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육군 제5837부대 <u>5대대장</u> 5. ~ 6. (생략) 7.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 8. (생략) ② ~ ③(생략)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<u>회무를 통괄한다</u> ② (생략)	<u>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</u>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<u>말한다</u>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<삭제>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회의에 부치는</u> -----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육군 제5837부대 <u>1대대장</u> 5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<u>구역 안에 있는</u> 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(현행과 같음)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----- ----- -----<u>직무를 총괄한다</u>. ② (현행과 같음)	· 제명 띄어쓰기 ·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춤 · 부대명칭 변경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 ② ~ ③ (생략)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〈단서 신설〉</u> 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구미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제14조(운영규정)----- ----- ----- -----.	•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 마련 •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 마련 •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춤